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64
----------	----

제출년월일 : 1998. 12.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제안이유

하수도법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주요골자

-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 (안 제4조)
-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안 제6조)
-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안 제7조)
-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둠(안 제8조)
- 위·수탁 기간은 협약일부터 20년 이내로 하되 1회의 협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함 (안 제12조)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안 제14조)
-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출장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5조)

3.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을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를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하수처리장”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라 함은 하수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하수처리장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탁에 관한 사항등) ①출장소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의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운영 예산액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관하여 출장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출장소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수 있다.

④출장소장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자에게 내릴수 있다.

제5조(명칭 및 위치) 위탁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출장소장이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심사기준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방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출장소장이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②수탁자를 공개모집 할 때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①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출장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9조(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①수탁자는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출장소장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출장소장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출장소장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업무)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유지관리
2.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 및 슬러지처리
4. 하수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수탁 기간) ①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위·수탁 기간은 협약일부터 20년 이내로 하되 1회의 협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②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위탁운영 실적을 제출받아 협약에 의한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재협약 여부를 2개월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등 유동재

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등에 대하여는 출장소장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②수탁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출장소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출장소장은 위·수탁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운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출장소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출장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위탁비용 등) ①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사용료등으로 충당하되 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④수탁자는 사업년도 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출장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수탁자가 제2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90일전까지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생활보전) ①수탁자는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시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하수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비 고
증평하수종말처리장	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228번지 일원	